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84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호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0호), 우형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9호)을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2021.12.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호진 의원 외 10명, 우형찬 의원 외 11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하는 한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의 자격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일부개정 사항 반영(별표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마. 출구 및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

-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마목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p> <p style="padding-left: 40px;">가. ~ 다.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 style="padding-left: 40px;">----- <u>것(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4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1]</p> <p><u>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u></p>	<p>[별표1]</p> <p><u>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u></p>

라. 정비·성 능점검 시설	• <u>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 에는 정비·성능점 검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u>
마. 출구 및 입구	(생 략)

- 주) 1. (생 략)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
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생 략)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
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5. (생 략)

라. <삭 제>	• <삭 제>
마. 출구 및 입구	(현행과 같음)

- 주) 1. (현행과 같음)
2. -----
-----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
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
할 수 있다.
-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
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
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
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
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
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
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 <삭 제>
4. (현행 제 5호와 같음)